

주민세 해설

김 중 만

행정자치부 세정과

I. 序

지방세에 있어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목이다. 우선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만 해도 '99 정기분 부과건수가 1,552만건(부과액 1,07억원)으로 지방세중 가장 많은 납세자를 가져 지방자치 구상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을 가진 세목일 뿐 아니라, 세수규모로도 소득할을 포함한 '99 총부과액이 2조 8,871억원으로 등록세, 취득세에 이어 3번째의 세수규모일 뿐 아니라 전체 지방세 부과액 19조 904억원의 15.1%에 달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에서 소득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방세 세수구조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신장도 기대되는 중요한 세목이다.

이렇게 주민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나 비중이 클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주민세 담당자 외의 일반 공무원들에게조차 주민세를 세대별로 납부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99 지방세 총체납액 9,733억원중 주민세의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3,105억원(31.9%)으로

징수율 89.2%로서 지방세중 자동차세(징수율 88.7%, 체납액 2,461억원) 다음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세의 체납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납세자의 무관심 외에도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 국세와의 과세시차를 들 수 있다.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개 주민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몇 개월 후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게 되는 데 이 시점에는 이미 납부할 돈이 없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가 많아 주민세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중에도 소득세와 2중과세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99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는 주민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고 주민세의 고지도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고지하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 앞으로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세의 체납세는 다소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액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 개개인은 성숙된 자치의식을 토대로 자발적인 납세협조를, 지방세담당 공무원은 공평하고 정확한 세정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자발적 납세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 住民稅 主要內容

1. 本質 및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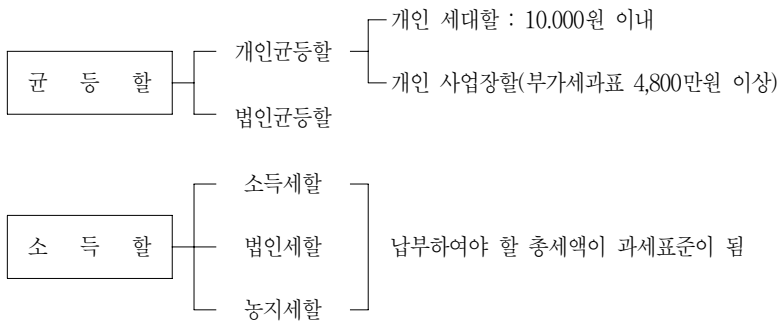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의 특성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으로서
 - 균등할은 인두세적인 성격의 조세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하여 유일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성격이며

- 소득할은 현행법에서 편의상 과세표준을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으로 하고 있어 이들 조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는 했으나 이들과는 별개의 독립세이며 근원적으로는 주민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 주민세는 고종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戶別稅)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행 체계의 주민세는 1973년 4월에 신설 · 시행되고 있으며 76년에는 지금의 시 · 군세로 되었다.

92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차등 과세되던 법인세균등할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과세하고, 94년부터는 법인세할 징수방법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방법으로 전환하였다.

98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개인균등할을 10,000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99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소득할의 10% 세율을 2000년까지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9년말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住民稅體系



3. 納稅義務者

가. 均等割

(1) 개인균등할

(가) 주소를 둔 개인 :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지방세법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소에 의한다
-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

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개인균등할 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세정 22670-2033, '89. 6.12)

② 회사 기숙사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납세의무여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839, '95. 8. 30)

③ 학생이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과 같이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915, '98. 3. 10)

④ 영내 거주 군인이 납세의무자인지

- 귀문과 같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군에 입대하여 현재의 실제 거주지가 영내인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1212, '97. 10. 1)

(나)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년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균등할 납세의무〉

- ① 소득세법에 의한 직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민세 사업장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고 사업자가 직접 주거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 ② 물적설비가 없이 순수하게 배달만 하든지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세정 13407-601, '95. 7. 3)
- ③ 노점상인이 개인사업장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노점상인”이라 함은 노천, 노상등 건물 밖에서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노점상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이 2,400만원(95년부터는 4천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세정 22670-15180, '85. 12. 18)

(2)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과세되나
- ① 인적설비가 있고, ② 물적설비가 있어야 하며, ③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점을 사실상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법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① 주유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유소를 위탁에 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00정유회사에서 A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 A)이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세정 13407-935, '95. 9. 29)

② 노동조합의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

- 주민세 균등할은 국민개세원칙의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자 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7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된 대상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귀 단체가 사업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대상임(세정 13430- 176, '97. 4. 11)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세 납세의무 〉

①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주택관리업자(법인)가 공동주택관리업무 를 수행할 경우그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법인균등할 의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1155, '97 .9. 18)

②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납세의무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주민세 균등할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임대아파트관리 사무소를 임대아파트 사업주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는 것이(세정 13407-137, '99. 11. 1)

※ 이 경우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실제 주민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는 임대주택법 제17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임

③ 자치관리에 의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납세의무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인가를 받았으므로 비록 법인격도 없고 등기를 필하지 않았더라도 동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지한 것은 적법함(내무부 내심 제 95-28, '95. 1. 28)

나. 所得割

(1)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 1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나)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소득세법 § 1①)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세할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① 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지정신청한 경우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신청을 하여 납세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소득세 납세지가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세정 13407- 1085. '95. 10. 30)

② 비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지정신청한 경우

-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정 13407 - 475(2000. 4. 6)호는 거주자인 경우임(세정 13407- 1085. '95. 10. 30)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시·군 내에서 소득세등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 주민세 납세의무도 성립하는 것임

4. 課稅標準과 稅率

가. 均等割

(1) 과세단위

- 법인균등할은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로 과세한다.
- 개인균등할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2) 세율

(가) 개인균등할

- 주소지 시장·군수가 1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고
- 개인 사업장할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0,000원(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세액으로 과세한다.

(나)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소유여부, 사업장 등록여부 불구(인적+물적+계속 사업영위)하고 과세대상이 되며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 사무소 또는 사업소 규모별 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종업원 \ 자본금액	10억 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무상출연된 기본재산이 자본금에 포함여부〉

지방세법 제176조 소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에 기재된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중 높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무상출연에 의한 기본재산도 “자본금액”에 포함됨(세정 13407 - 803, '96. 7. 18)

나. 所得割

(1) 소득세할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결정·경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 결손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소득세액이 결손처분된 때에는 주민세 소득세할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 1. 1이후에는 본규정을 삭제하여 별건심사함.

(2) 법인세할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원천징수한 법인세 및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도 주민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함.

〈법인세 가산세등 주민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① 법인세 등의 가산세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세정 13407-1202, '99.10.1)
- ※ 법인세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본세없는 가산세 300만원만을 납부했다하더라도 그 법인은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과표 포함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주민세과표에 포함됨
-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2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3) 소득할 세율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 인 세 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 지 세 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상기 세율은 2000년 말까지 적용되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개인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 표준세율의 특례적용 시기 및 조례 〉

- 지방세법('95. 12. 6. 개정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에서 '98. 12. 31까지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
- '98. 12. 3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년 12. 31까지로 연장
 - ※ 서울시는 조례('95.12.30. 개정된 조례 부칙 제2조)로 '96부터 '98까지 과세기간이 종료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95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율은 7.5% 적용)

5. 賦課徵收

가. 普通徵收

〔 균등할
수시부과되는 소득할

나. 特別徵收

-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대상

- ① 소득세법(제5장)상의 원천징수
- ②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상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③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④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특별징수

(1) 특별징수대상

(가) 소득세할

-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세 등에 대한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는 같은 의미이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로 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라 함
-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제127조)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봉사료 수입금액 제외),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봉사료 수입금액(음식, 숙박,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 사업소득의 종류 〉

㉑ 사업서비스업

- a) 변호사업 · 공증인업 · 집달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등 법무서비스업
- b)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등 회계서비스업
- c)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중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또는 신용조사업
- e) 건축사업 · 측량업 · 기술사업등 기술감사서비스업
- f) 도선사업 · 직업소개소 또는 상담소업

㉒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a) 의료법에 의한 의사 ·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업
- b) 의료기사업에 의한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㉓ 자유직업

- a)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b) 연예에 관한 감독 ·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 장치 · 조명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c) 설계감독 · 건축감독 · 기술지도 · 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 제공은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d) 음악 · 재단 · 무용 · 요리 및 바둑기사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e) 직업운동가 · 역사 · 기수 · 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소득

- f)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무소득
- g)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h)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 등이 받는 고문료·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 I) 교정·번역·고증·숙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j) 근로소득 및 a) 내지 i)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 ※ 자유직업소득중 접대부와 댄서가 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의 대상 아님

(나) 법인세할

-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다

※ 내국법인에게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민세는 특별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 결산후 당해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주민세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 농지세할

- ① 영업연조생산업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연초를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 ②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인삼을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2)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농지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3) 징 수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저축세액 공제, 주택자금공제세액 등의 세액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납 입

납입서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를 첨부하여 시·군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5)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 주민세를 미달하게 징수·납입한 경우에도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6)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지방세법 제179조의3 ④)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의 조직(소득세법 §149)〉

- 읍종근로소득자(외국기관등으로 부터의 근로소득, 주한 미군근무자 제외)
- 농·축·수산물판매업자(20인이상), ○ 노점상인(20인이상)
-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

-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소득에 속하는 읍종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납세의무자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고,
-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는 제175조 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조합이 소재한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7)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주민세액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하여야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 특별징수지 관할 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 주민세 특별징수 과오납금 환부 여부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이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함.

— < 한·미 조세협약과 주민세 특별징수 > —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 받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액하여 원천징수하더라도 주민세는 전액 징수하여야 함.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 1 조제 1 항에서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만 설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 1 조제 2 항에서 “제 1 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협약 체결일인 '76. 6. 4 현재 이미 주민세('73. 4. 1 신설)가 과세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는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별도로 특별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세정1268 - 7949, '80. 6. 10)

다. 申告納付

(1) 소득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③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 ④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 고지방법 개선》

- '99. 12. 28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6060호)되어 2001. 5. 1부터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개선됨
-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 4

(2) 법인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
- ②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30일내
- ③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내
- ④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30일내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세액의 귀속사업 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법인세할 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구 정은 배제된다.

〈 징수유예 등에 따른 주민세 납기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기 기한연장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납기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기도 연장되는 것임(세정 13407-478, '96. 3. 8)

②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신고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기한 연장 처분을 받아야 함(세정 13407-618, '96. 6. 14)

※ 국세기본법이나 당해 세법에 의한 기한의 연장 처분을 받은 경우는 주민세의 납기도 따라서 연장되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는 주민세납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라. 國稅 등의 決定・更正에 따른 還付 또는 追徵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이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 또는 환급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 부과처적 기간 및 환부 청구권의 소멸시효 > —

① '93 귀속분 법인세가 '99. 3. 경정된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

구 지방세법('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의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법인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동 주민세는 동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 일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 3.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세정 13407 - 960, '99. 7. 29)

② 당초의 부과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민세의 환부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민세의 부과 그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액 결정 되었다면 주민세도 환부대상이 됨(세정 13407-618, '96. 6. 14)

※ 법인세·소득세등이 결정·경정된 경우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주민세를 환부청구할 수 있거나 신고납부를 기다려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③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대법원 98두 11250, '99. 4. 9)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90. 7. 5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96. 7. 10 부과한 소득할 주민세는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견과 관련, '90. 7. 5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한인 '91. 5. 31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때부터 부과할 수 있어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90. 7. 5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96. 7. 10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결.

마. 納 期

- 균등할 ... 毎年 8. 16 ~ 8. 31(과세기준일 : 8월 1일)
- 기 타 ... 수시부과

〈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수시부과 여부 〉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로 실제 납입하거나 또는 납부할 전체 세액이 되어야 하므로 중간예납세액(법인세법 제30조)만을 과표로 하여 법인세할을 수시 부과할 수는 없음.

바. 納稅地

(1) 균등할

-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은 주소지(사업장할은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본점 · 사무소 · 사업소 ·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과세한다
- ※ 하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설 등이 많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협의하여 결정

(2) 소득할

(가) 소득세할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 다만,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 · 군,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의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된다.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검토 〉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국제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3조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당시(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타당함
-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으나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며,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정(부과고지)한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시점의 주소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됨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어짐
-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됨)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검토 〉

① 근무지가 유동적인 자의 납세지

근무지가 유동적인 승객·화물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 안내원, 보조원)의 근무지는 동 업무를 시작 또는 마감하는 장소(차고지,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가 위치한 곳을 근무지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납세지를 결정하여야 함(세정 1268-7897, '80. 6. 9)

② 본점에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임(세정 13430 - 99, 2000. 1. 24)

③ 통장개설지와 사업소득의 지급지가 다른 경우 주민세 납세지

지방세법 기본통칙 175-3에서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소정의 지급지를 “소득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통장개설지”라고 하고 있음으로 귀문과 같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통장개설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본점 또는 지점, 지사를 막론하고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이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임(세정 13407 - 117, 2000. 1. 27)

(나) 법인세할

- 법인의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 각각의 시·군이 납세지가 되며
- 법인이 본사외에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동일한 광역시내에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한 사업장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법인세할의 안분 기준

시·군 납부세액 =

$$\text{법인세할 총액}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용어의 의미)

- ① 사업장 : 인적 또는 물적설비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포함됨)
- ② 종업원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③ 건축물 : 시행령 제75조의2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되 별도의 기계 장

치를 포함. 이 경우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건축물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함.

〈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방법 〉

① 임대업 법인이 임대해 공하고 있는 건축물이 안분대상인지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대업운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만 해당하고, 임대해 공하고 있는 면적이나 임대되지 아니한 채로 공실로 있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임(세정 13407-252, '96. 3. 8)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안분방법

귀 재단법인(원불교)의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안분하되 과세표준은 수익사업과 재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를 모두 합하여 계상되어야 함(세정 13407-375, '97. 4. 28)

③ 경비용역회사의 법인세할 안분방법

경비용역 인원이 과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법인세할 안분대상은 되는 것이지만 별도의 물적설비가 없다면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함(세정 13407 - 692, '95. 7. 19)

④ 포장도로가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지('97년부터는 제외됨)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 것인 바 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포장도로 및 포장 차량차장지의 수평투영면적도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됨(세정 13407-1159, '95. 11. 15)

※ 본 질의회신은 '96.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가 개정되기 전의 것임을 특히 유의 → 현재는 영 제75조의 2 제2호의 건축물로 개정되어 포장도로는 안분대상에서 제외됨(세정 13407-232, '99. 10. 6)

바. 課稅資料 通報

- 세무서장은 소득세·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1개월내에 통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4,800만원(직전 년도)이상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사업자 포함)의 자료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 徵收方法

-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되 균등할과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고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아. 少額 不徵收

-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치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6. 非課稅

가. 均等割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3) 주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관에 근로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상호주의원칙)
 - (4) 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5) 주한외국 정부기관

〈 개인균등할의 비과세 범위 〉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이 무엇 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 비과세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바, 목사도 당연히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균등할이 비과세됨.

- (6) 주한국제기구, 주한 외국원조단체
- (7) 주한외국 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8)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
- (9)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
-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所得割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이므로 당해세의 비과세대상은 소득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

7. 過誤納金の 還付와 充當

- 주민세중 소득세(종합소득세 제외)할과 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 주민세 소득세할의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소득세할중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자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중에서 환부해주고 조정 납입할 수 있으나 다음 달 이후 납입할 금액이 없거나 납세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자치단체에서 환부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2이상의 자치단체에 과오납된 경우에는 주민세를 환부받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등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합산되어 환급된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 기 납부된 세액이 전무하더라도 환부대상자의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함 (세정13407-560, '97.5.28)

Ⅲ. 自治團體別 住民稅 個人均等割 稅率 現況

금액구분	단체수(비율)	단 체 명
계	165(100%)	
5,000원	11 (7%)	[강원10]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주군, 인제군 [충북 1] 옥천군
4,800원	3 (2%)	서울, 부산(기장군 3,000원), 대구(달성군 2,000원)
4,500원	12 (8%)	인천(강화·옹진군 3,000원), 광주, 대전, [경북 9]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4,000원	31 (19%)	울산(울주군 2,000원) [경기16]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평택·이천·안성의 읍면 3,000원) [강원 3]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충남 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전남 1] 여수시(읍면 3,000원) [경남 5]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3,600원	5 (3%)	[강원 4]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 강릉시(각 시의 읍면 2,000원) [전남 1] 남원시(읍면 2,000원)
3,500원	2 (1%)	[경기1]군포시 [전남1] 목포시
3,000원	84 (50%)	[경기13]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파주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양평군 [강원 1] 양양군 [충북 6] 청주시, 제천시(읍면 2,500원),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충남 6] 서산시(읍면 2,000원),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 9]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군산·익산·정읍·김제의 읍면 2,000원)

지방세 해설

주민세 매입

금액구분	단체수(비율)	단 체 명
		[전남18]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순천·나주의 읍면 2,000원) [경북14] 영주시(읍면 2,000원),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5] 마산시(읍면 2,000원),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읍면 2,500원),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2,500원	2 (1%)	[제주 2] 북제주군, 남제주군
2,000원	15 (9%)	[경기 1] 가평군 [충북 4] 충주시,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4] 부여시, 서천시, 청양군, 홍성군 [전북 4]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 2] 광양시, 담양군

※ '98 :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市 3,000원, 기타시 1,800, 군 1,000원 ☺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2000 지방세 성질별 세수구조

구 분	세 목	2000년 예산액(억원)	비중(%)
계	16개 세목	185,028	100
○ 소득과세(2)	주민세, 농지세	26,563	14.7
○ 소비과세(4)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주행세	27,148	15.0
○ 재산과세		99,819	55.4
· 보유과세(4)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0,436	16.9
· 거래과세(2)	취득세, 등록세	69,383	38.5
○ 기 타(4)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26,896	14.9
○ 과 년 도		4,782	2.6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 (2000. 3월 현재)

- 편집실 -